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면접시험의 ‘경찰윤리의식’ 면접 평정 항목에는 준법성에 관한 내용이 사회 통념상 포함됨에도 현재 누락되어 있어 이를 추가하여 명확히 하고, 시험실시기관에서 작성하는 채용심사관의 ‘종합의견서’에 대한 최종 검토자를 채용 담당 부장·처장까지 격상하여 내실 있는 면접시험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의사상자 등에 대한 가점 부여’와 관련하여 제출 서류 규정을 신설하고, 시험별 서류의 종류·제출 시기 규정을 일괄 통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 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경찰윤리의식(공정성, 사명감, 청렴성, 준법성)

제38조의2제2항 중 “채용담당 주무과장과 인사·정보·감찰 담당(경찰 인재개발원은 학생지도)”를 “인사·감찰·정보 담당(경찰대학 및 중앙경찰학교는 교육생의 생활지도)로, “경찰공무원(경정 또는 경감인 경찰공무원으로 한정한다)의 검토”를 “계장(경정 또는 경감)의 검토를 거쳐 채용담당 과장·부장(경찰대학은 처장을 말한다)의 결재”로, “제공하여야”를 “제공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해당 부서”를 “관할 경찰기관”으로 한다.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영 제17조에 따른 신규채용시험”으로,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은”을 “공고된 기일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자격증명서 1통(응시요건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된다)

6. 경력증명서 1통(응시요건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된다)

제39조제1항제8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험실시권자는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를 “시험실시권자는”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이”를 “시험 응시자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증명서(시험성적의 가산특전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된다)

별표 3의 제목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응시자격증 구분표 (제34조제1항관련)”을 “경력경쟁채용등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 (제34조제1항 관련)”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6조(면접시험의 평가요소와 합격자 결정) ① 면접시험은 50점 만점으로 하되, 제1호의 평가요소는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평가요소에 대한 판단자료로 활용하고,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평가요소는 1점부터 10점까지 정수로 평가한다.	제36조(면접시험의 평가요소와 합격자 결정) ① -----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u>경찰윤리의식(공정, 사명감, 청렴성)</u>	4. <u>경찰윤리의식(공정성, 사명감, 청렴성, 준법성)</u>
5. · 6. (생략)	5. · 6.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38조의2(채용심사관의 자격 및 직무) ① (생략)	제38조의2(채용심사관의 자격 및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채용심사관은 응시자의 제출 서류, 신원조사 결과 등 시험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심사·평가하고, 그 결과를 <u>채용담당 주무과장과 인사·정보·감찰 담당(경찰인재개발원은 학생지도 담당을 말한다) 경찰공무원(경정 또는 경감인 경찰공무원으로 한정한다)의 검토를 받아</u> 별지 제	② ----- ----- ----- ----- <u>인사·감찰·정보 담당(경찰대학 및 중앙경찰학교는 교육생의 생활지도 -</u> ----- <u>계장(경정 또는 경감)의 검토를 거쳐 채용담당과장·부장(경찰대학은 처장을</u>

14호서식의 종합 의견서를 작성하여 면접위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채용심사관은 신원조사 결과가 부실하거나 신원조사 결과에 대한 평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중점조사항목을 정하여 해당 부서에 신원조사를 다시 요구할 수 있다.

제39조(응시서류의 제출등) ① 영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경찰청장이 정하는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하며,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생 략)

3.·4. (생 략)

<신 설>

<신 설>

7. 삭 제

말한다)의 결재-----
----- 제공해야 ----
----.

③ -----

----- 관할 경
찰기관-----
-----.

제39조(응시서류의 제출등) ① 영 제17조에 따른 신규채용시험--

----- 공고된 기일에 ----

-----.

1. (현행과 같음)

2.·3.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5. 자격증명서 1통(응시요건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된다)

6. 경력증명서 1통(응시요건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된다)

8. (생략)

②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를 제출받은 시험실시권자는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라 한다)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서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권자가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 (생략)

<신 설>

3.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시험성적의 가산특전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된다)

4. (생략)

4. (현행 제8호와 같음)

(2) -----
----- 시험 실시권자는 -----

----- . ----- 시험
응시자가 -----

----- .

1. (현행과 같음)

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증명서(시험성적의 가산 특전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된다)

3. 국가보훈부장관-----

4. (현행과 같음)

③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채용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이라 한다)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경찰청장이 정하는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하며, 면접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삭제

2. 민간인 신원진술서 1통

3. 삭제

4.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1통

5. 삭제

6. 지문대조표 1통(시험실시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7. 자격증명서 1통(응시요건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된다)

8. 경력증명서 1통(응시요건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된다)

9. 삭제

10. 개인신용정보에 관한 조회서 1부

④제3항의 응시원서를 제출받

<삭 제>

<삭 제>

은 시험실시권자는 면접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면접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서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권자가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

2. 삭제

3.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시험성적의 가산특전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된다)

4. 학교생활기록 관계 서류(시험실시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된다)